

환경법개정법률안 모음

◎ 환경부 공고 제2006-265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사업자가 작성하는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폐기물전자인계서로 단일화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고,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한 법령정비계획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검토항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하여 작성하는 폐기물간이인계서 또는 폐기물인계서 대신에 폐기물전자인계서를 작성(감염성폐기물인 경우 무선주파수인식태그를 사용)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함(안 제25조제4항 및 제5항 개정).

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을 수·출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수입폐기물의 인계·인수시 마다 폐기물전자인계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수입폐기물을 운반·보관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수입한 폐기물을 수입당시의 성상 그대로 수출할 수 없도록 함(안 제25조의10 및 제25조의11 신설).

다.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검토할 사항과 허가조건부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정(안 제26조제2항 및 제6항 개정)

라. 영업정지 처분에 같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9조제1항 개정)

마.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처리를 보충

하기 위한 제도 중 이용율이 낮은 폐기물처리이행보 증금 예치제도를 폐지함(안 제43조의2제1항, 제4항, 제7항 및 제8항 개정).

바. 방치폐기물의 처리 책임 순위를 방치행위자, 사업장승계자, 공제조합 등의 순으로 조정하여 방치 폐기물이 철저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 2 개정, 제45조 개정).

사. 폐기물전자인계서외에도 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보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처리기구의 장은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2항 및 제3항 개정, 동조 제5항 신설).

아. 재활용신고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재활용신고사업자가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활용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사전적립을 사후환경관리를 대행하는 자에게 예치 또는 적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 및 49조 개정).

◎ 환경부 공고 제2006-266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 및 사후관리 대행자 중 환경관리공단을 제외하고 한국환경자원공사를 추가하여 관련 업무가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합성수지를 원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합성수지를 지정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 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 중 “환경관리공단”을 삭제하고 “한국환경자원공사”와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를 추가함(안 제25조).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 중 “환경관리공단”을 삭제하고 “한국환경자원공사”를 추가함(안 제28조).

다.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를 원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합성수지 및 폐합성고무는 지정폐기물에서 제외함(안 별표1 제1호가목중 (1) 및 (2)).

라. 페페인트 보관용기에 잔존하는 페페인트의 경우 유기용제와 혼합되지 않고 건조상태인 경우 지정폐기물에서 제외함(안 별표1 제5호).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1호를 삭제하며, 동조에 제1호의3 및 제1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

1의4.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의 기술사가 개설한 사무소에 한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1호를 삭제하며, 동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한국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

별표 1 제1호가목(1) 및 (2)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폐합성수지(합성수지제조업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것에 한하되, 합성수지를 원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2) 폐합성고무(합성고무제조업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것에 한하되, 합성고무를 원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5. 페페인트 및 페락카

가. 페인트 및 락카와 유기용제가 혼합된 것으로서 페인트 및 락카 제조업, 용적 5세제급미터 이상 또는 동력 3마력 이상의 도장시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것

나. 페인트 보관용기에 잔존하는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하여 유기용제와 혼합된 것

다. 페인트 사용 후 보관용기에 페페인트가 잔존하는 경우 페인트가 건조되지 않아 흘러내릴 수 있는 상태의 것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기술관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자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약기간의 종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술관리를 대행할 수 있다.

③(사후관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자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약기간의 종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를 대행할 수 있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중전의 규정에 같음하여 이 영 또는 이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환경부 공고 제2006-26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체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이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기술진단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관리공단과 한국환경자원공사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위탁관리기관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을 삭제하고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를 추가함(안 제3조).

나. 폐기물수탁확인서와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하나의 서식으로 하여 작성하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다. 지정폐기물 처리계획과 관련한 지정폐기물분석 전문기관에 “한국환경자원공사”를 추가함(안 제16조제6항제1호의1 신설).

라. 폐기물분석 전문기관의 인정절차, 관리를 위한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도록 함(안 제16조제7항 신설).

마. 대기오염물질의 제거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 만을 새롭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검사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23조제1항 단서 신설).

바. 소각시설·매립시설 및 멸균분쇄시설의 검사기관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를 추가하고 “환경관리공단”을 삭제함(안 제23조제3항제1호내지 제3호).

사.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기관 중 “환경관리공단”을 삭제함(안 제23조제4호).

아.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를 설치한 소각시설의 최초정기검사를 사용개시일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안 제23조제5항).

자. 다이옥신과 매립시설의 침출수를 측정하는 기관에 “한국환경자원공사”를 추가함(안 제2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차.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지정하는 다이옥신 및 매립시설 침출수 측정기관의 지정절차, 관리를 위한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4항 신설).

카. 폐기물처리담당자 교육과정 중 폐기물처리업 기술요원과정·폐기물재활용신고과정 및 폐기물처리시설 기술담당자과정을 이수한 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봄(안 제35조제1항 단서 신설).

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과정과 소규모처리시설의 관리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기간을 3일에서 1일로 단축함(안 제35조제2항 단서 신설).

파. 폐기물처리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기관에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을 추가함(안 제34조).

하. 시험분석기관에 “한국환경자원공사”를 추가함(안 제45조).

거. 재활용신고 대상 사업장폐기물에 “왕겨와 쌀겨”를 추가하고, 동 품목을 재활용신고대상에서는 제외함(안 제46조제2항제9호 신설 및 제3항).

너.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발주처 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함(안 제47조제1항제2호).

다. 폐오일필터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지정폐기물 분류번호를 부여함(안 별표 3 06-01-05 신설).

러. 매립가스를 회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이 설치된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유기성오니의 수분함량이 75%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매립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4 제4호라목(1)(나)①㉔신설).

며. 드럼 등 내용물이 외부에 유출될 우려가 없는 보관용기에 보관하는 경우로서 침출수 발생 등으로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방류벽을 설치하여 지붕과 벽면을 갖추지 아니한 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4 제6호나목(5) 단서 개정).

버. 지정폐기물을 보관개시일로부터 1년간 보관할 수 있는 사업장을 연간 총배출량 2톤 미만에서 3톤 미만으로 완화함(안 별표 4 제6호나목(6) 개정).

서. 국내 적정처리시설이 없어 장기보관이 불가피한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PCBs)은 1년이상 장기 보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둠(안 별표 4 제6호나목(6-1) 및 (6-2) 신설).

어. 지정폐기물 보관표지판에 기재하는 사항을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량, 취급시 주의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으로 한정함(안 별표 4 제6호나목(7) 개정).

저. 폐유의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재생연료유에 대한 근거와 처리기준, 품질기준 및 시설기준을 새로 규정함(안 별표 4 제6호다목(2)(나)에 ⑤, ⑥ 및 ⑦ 신설).

처. 폐축매종 가연성은 소각처리토록 하고, 폐오일필터의 경우 고철·여과지·고무 및 폐윤활유를 분리하여 고철을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여과지·고무 등은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함(안 별표 4 제6호다목(2)(사) 단서 신설 및 동호다목(2)(너) 신설).

커. 폐오일필터 및 재생연료유 재활용업의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별표 6 제2호마목(3) 및 (4) 신설).

터.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 폐유 등을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 및 폐오일필터를 파쇄하여 고철로 재활용하는 자의 적정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별표 6의2 제3호바목 내지 아목 신설).

피.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측정기기를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는 자동계측장비에 사용한 기록지의 3년간 보관의무 대상에서 제외함(안 별표 8 제1호아목 단서 신설).

허. 지정폐기물의 사업장폐기물을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중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지키도록 명시함(안 별표 11의2 제2호다목(4) 신설).

고. 폐유리를 파쇄·분쇄하여 재활용하는 범위를 유리제품의 원료에 한정하였으나, 건축·토목자재의 원료로 가공하는 경우까지 확대함(안 별표 11의2 제4의6호).

노. 재활용이 가능한 폐목재의 범위와 사용용도를 확대함(안 별표 11의2 제4의9).

도. 수리·수선하여 같은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경우 및 다른 사업장의폐주물사를 다시 사용하는 경우를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규정하여 재활용을 용이하게 함(안 별표 11의2 제4의21호 및 제4의22호 신설).

로. 폐축전지, 폐변압기, 페타이어, 폐가전제품 및 페드럼 수집운반업을 하는 자가 재활용신고를 하여 영업하는 경우 별도로 보관시설 설치승인을 받지 않으면 보관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안 별표 12 각 호의 비고 제1호).

모. 폐기물처리업의 시설기준 및 시설관리 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기준을 위반사항의 경중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별표 16 제2호(9)(가)중 ①개정 및 동호(18)).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1호를 삭제하며, 동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한국환경자원공사”라 한다)

제16조제3항 중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동항제2호에 따른”으로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동항제3호에 따른”으로, “별지 제4호의4서식”을 “별지 제1호의5서식”으로 하고, 동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조동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한국환경자원공사

⑦제6항제3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인정절차, 관리를 위한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로,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호에 따라”로, “당해 시설”을 “그 시설”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만을 증설교체한 때에는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제3항제1호가목을 삭제하고, 동항동호나목 내지 라목을 각각 다목 내지 마목으로 하며, 동항동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한국환경자원공사

제23조제3항제2호가목을 삭제하고, 동항동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동항동호

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한국환경자원공사

제23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동호가목을 삭제하며, 동항동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동항동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한국환경자원공사

제23조제3항제4호가목을 삭제한다.

제2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사용개시일로부터 3년”을 “사용개시일부터 3년(「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제1호다목 내지 바목을 각각 라목 내지 사목으로 하고, 동항동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한국환경자원공사

제24조의2제1항제2호나목 내지 마목을 각각 다목 내지 바목으로 하고, 동항동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한국환경자원공사

제24조의2제1항제2호라목(중전의 다목) 중 “제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7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제1호사목 및 제2호바목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이옥신측정기관 및 매립시설의 침출수측정기관의 인정절차, 관리를 위한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경관리공단”을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또는 환경관리공단”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2호 내지 제5호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제1호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3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4조제2항제3호에 따라 환경보전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1일 이내로 한다.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의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5. 한국환경자원공사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 중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1”을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중 어느 하나”로 한다

9. 왕겨, 쌀겨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로,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호에 따른”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공사를 시공하는 자”를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로 하며, 동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전에”로 한다.

별표 3 06-01-00중 06-01-05를 06-01-06으로 하고, 06-01-0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06-01-06(종전의 06-01-05) 중 “폐유, 오일필터”를 “폐유”로 한다.

06-01-05 폐오일필터

별표 4 제4호라목(2)나①에 ㉞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㉞매립가스를 회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이 설치된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㉞ 및 ㉞에 불구하고 수분함량 75%이하로 탈수·건조하여 매립할 수 있다.

별표 4 제6호나목(5) 단서 중 “주변환경 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주변환경 오염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과 벽면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이 경우 드럼 등의 보관용기 취급과정에서 내용물이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방류벽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호동목(6) 단서 중 “2톤”을 “3톤”으로 하며, 동호동목(7)을 (9)로 하고, 동호동목에 (7) 및 (8)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호동목(9)(종전의 (7))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19조의2 및 (6)에 불구하고 1년 이상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을 보관하려는 배출자 및 처리업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8) (7)에 따라 보관기관의 연장을 받으려는 배출자 및 처리업자는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라 폐기물 보관기간연장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의 보관기간연장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7서식의 폐기물보관기간연장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9)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량, 취급시 주의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가) 보관창고에는 보관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표지의 규격 : 가로 60센티미터 이상×세로 40센티미터 이상(드럼 등 소형용기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가로 15센티미터 이상×세로 10센티미터 이상)

(다) 표지의 색깔 : 황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별표 4 제6호다목(2)(나)④에 ㉞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호다목(2)(나)에 ⑤ 내지 ⑦을 다음과 같이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㉞ 인화점 : 섭씨40도씨 이상
 ⑤ 폐유 또는 폐유와 액상 또는 유동상의 다른 지정폐기물의 혼합물을 균일화시켜 열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처리물(이하 “재생연료유”라 한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⑥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⑥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시험방법, 폐기물공정시험방법 또는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른 시험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㉟ 열량 : 킬로그램 당 3000 킬로칼로리 이상
- ㊱ 황 : 무게비율로 2.5 퍼센트 이하
- ㊲ 납 및 그 화합물: 킬로그램 당 100 밀리그램 이하
- ㊳ 카드뮴 및 그 화합물: 킬로그램 당 1.0 밀리그램 이하
- ㊴ 비소 및 그 화합물: 킬로그램 당 2 밀리그램 이하
- ㊵ 크롬 및 그 화합물: 킬로그램 당 50 밀리그램 이하
- ㊶ 수은 및 그 화합물: 킬로그램 당 1.5 밀리그램 이하
- ㊷ 염소 및 그 화합물: 킬로그램 당 2,000 밀리그램 이하
- ㊸ 재생연료유는 시멘트 및 석고를 제조하기 위한 소성로에서 보조연료로 사용하거나 소각로에서 고온

소각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4 제6호다목(2)(다)② 및 ④에 각각 ㉞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㉞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나)⑥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 4 제6호다목(2)(마)를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폐페인트 및 페락카의 경우

① 폐페인트 및 페락카는 고온소각하거나 유기용제 등 재활용대상 물질을 회수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②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나)⑥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 4 제6호다목(2)(사)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호다목(2)에 (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폐촉매 중 가연성의 것은 소각(할로젠족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한 폐촉매는 고온소각)할 수 있다.

(너) 폐오일필터의 경우

고철, 여과지, 고무 및 폐윤활유를 각각 분리할 수 있도록 폐오일필터를 파쇄처리한 후 고철은 별도로 선별하여 재활용하고, 여과지, 고무 등 재활용이 어려운 파쇄물은 소각 등의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별표 6 제2호마목(3)을 (5)로 하고, 동호동목에 (3)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폐오일필터를 재활용하는 경우

(가) 시설 및 장비

1) 보관시설 : 1일 처리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폐오일필터에서 누출되는 폐유를 수거·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2) 처리시설 기준

가) 자동투입 장치 : 폐오일필터 이송시설

나) 파쇄시설 : 동력 75마력 이상의 시설

다) 분리시설 : 파쇄물에서 고철, 폐 종이 등을 분리할 수 있는 시설

- 라) 압축시설 : 폐종이를 15HP이상으로 압축하여 폐유를 분리할 수 있는 시설
- 마) 이송시설 : 분리된 고철, 폐종이 등을 이송할 수 있는 시설
- 3)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 (나)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1인 이상
- (4) 별표 4 제6호다목(2)에 따라 폐유 등을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
 - (가) 시설 및 장비
 - 1) 공통시설 및 장비
 - 가) 보관시설 : 1일 처리능력의 10일분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
 - 나) 유량 계측 시설 : 보관시설별 각 1식 이상
 - 다)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 2) 개별시설
 - 가) 원료를 1일 20킬로리터 이상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 혼합시설 : 혼합장치가 설치된 내부용적 30세제곱미터이상 1기 이상(폐유와 다른 폐기물을 혼합하는 경우에 한한다)
 - 여과(정제)시설 : 시간당 처리능력 7.5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 유수분리시설 : 폐수이동장치 및 부속시설을 포함한 시설로 시간당처리능력 3세제곱미터 이상 1기 이상 (물리적 증류조작을 통한 유수분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나)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1인 이상

별표 6의2 제3호비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동호에 시목 및 아목을 다음과 각각 같이 신설한다.

바.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 폐유 등을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 및 폐오일필터를 파쇄하여 고철로 재활용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 품목의 공급시설·공급량 및 공급기간 등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급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사.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는 별표4 제6호다목(2)(나)④에서 정한 기준항목을 분기 1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3년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아. 별표 4 제6호다목(2)에 따라 폐유 등을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는 별표4 제6호다목(2)(나)⑥에서 정한 기준항목을 분기 1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3년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8 제1호아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 제2호가목(1)(나)①㉞ 단서, 동호동목(1)(나)②㉞, 동호동목(1)(나)③㉞ 단서 및 동호동목(1)(나)④㉞ 단서 중 “일시적으로”를 “장애제거와 정상가동에 필요한 시간동안 일시적으로”로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제15조의2에 따라 측정기를 부착하고 이를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온도데이터를 저장매체에 기록·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1의2 제2호가목 중 “석제품의 제조시설”을 “석제품의 제조 및 가공시설·건설공시장의 세륜시설”로 하고, 동호다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호의6 중 “유리제품의 원료”를 “유리제품 또는 건축·토목자재의 원료”로 하고, 제4호의9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표에 제4호의21 및 제4호의2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축·토목공사 등의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이어야 한다.

4의9. 폐목재(페인트·기름·방부제 등이 묻어 있는 폐목재는 제외한다) 또는 벌채·산지개간·건설공사 등으로 발생한 임목폐기물로 숲·활성탄·톱밥·열탄 등을 제조 또는 나무제품의 원료로 가공하거나 파쇄하여 제초용·축사용·퇴비원료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4의21.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물체에 한한다)을 수리·수선하여 같은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단, 수리·수선하는 과정에서 지정폐기물 및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비용을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4의22. 다른 사업장의 폐주물사를 주물사로 다시 사용하거나, 금속용융로에 첨가제, 부원료 등으로 투입하는 경우(단, 비용을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별표 12 비고 1 중 “제46조제2항제4호 내지 제7호 또는 제46조제3항 별표11의2 제4호의15”를 “제46조제3항 별표 11의2 제4호의15”로 한다.

별표 16 제2호(9)(가)① 위반행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18)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처리시설 및 보관시설의 기준을 위반하거나 주차장이 없는 때

(18)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할 때 (가) 바닥재의 강열감량 기준을 위반한 때 (나) (가)외의 사항을 위반한 때	법28조 제5호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영업정지 허가취소
---	----------	----	------------	------------	------------	--------------

별지 제1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6서식 및 제1호의7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23조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제3조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

③(보관기간 연장특례의 유효기간) 별표 4 제6호 나목(7) 및 (8)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④(기존 폐오일필터 중간처리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법 제26조에 따라 폐오일 필터를 대상폐기물로 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는 2007년 12월 30일까지 별표6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고 별표 4의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